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04호 2023. 10. 11.(수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3-17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3
- 하동군 고시 제2023-178호 기준기준점 성과고시 5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3-1306호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8
- 하동군 공고 제2023-1317호 「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 40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3-1303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ASF) 알림 46

회									
람									

하동군 고시 제2023 - 177호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26.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진정1길 48-3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3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44-95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이동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9.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454-2	경상남도하동군금남면진정1길48-3	20230926	행정구역명(진정)에 서수식 도로명을 부여하여 진정1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172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088-60	20230926	횡천과 옥종의 경계지점에 있는 재로서 재를 넘을때 산모통이를 돌고 돌아 넘는다고해서 돌고지재라고한 옛지명 사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14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경총로 427-96	20230926	정기룡장군 추모사당을 지나가는 도로로 지역의 역사성 반영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이동사유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 번호 변경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 길 44-69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 길 44-95	20230926	기초구간 정정	중대리 아래쪽에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동군 고시 제2023-178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0. 5.

하 동 군 수

기준점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표고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 재질	비 고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Y					
지적도근점	W4928	35-03-45.1276	127-49-51.7745	중부	274348.48	275808.04	27.899	양보면 장암리 1027-3	2023.08.3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29	35-03-44.1694	127-49-49.1860	중부	274318.41	275742.70	27.898	양보면 장암리 714	2023.08.3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30	35-03-43.0656	127-49-48.2310	중부	274284.19	275718.78	27.898	양보면 장암리 471	2023.08.3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31	35-01-03.1314	127-54-34.2393	중부	269418.48	283011.07	27.958	진교면 고통리 251	2023.09.0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32	35-01-00.5715	127-54-34.5994	중부	269339.68	283020.92	27.959	진교면 고통리 290	2023.09.0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33	35-00-56.8810	127-54-34.4666	중부	269225.91	283018.59	27.961	진교면 고통리 290	2023.09.04	맨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34	35-12-06.3255	127-38-29.3060	중부	289666.81	258415.29	27.810	화개면 탑리 854	2023.09.0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35	35-12-04.9580	127-38-30.0231	중부	289624.78	258433.70	27.813	화개면 탑리 113-1	2023.09.0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36	35-12-05.7415	127-38-30.3086	중부	289648.98	258440.77	27.812	화개면 탑리 106-1	2023.09.0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37	35-10-33.8235	127-55-09.8822	중부	287014.74	283752.46	57.200	옥종면 대곡리 219	2023.09.0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38	35-10-37.7327	127-55-07.5703	중부	287134.67	283692.85	56.131	옥종면 대곡리 243	2023.09.0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39	35-10-38.4325	127-55-16.2474	중부	287158.27	283912.21	55.089	옥종면 대곡리 1009-1	2023.09.0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40	35-09-38.4549	127-42-53.0079	중부	285155.16	265118.65	48.848	악양면 신성리 870	2023.09.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41	35-09-39.5492	127-42-54.2803	중부	285189.12	265150.61	46.928	악양면 신흥리 886-3	2023.09.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42	35-09-39.5932	127-42-57.0273	중부	285190.98	265220.13	57.270	악양면 신흥리 886-3	2023.09.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43	35-11-02.9960	127-50-28.9029	중부	287850.86	276634.84	231.888	옥종면 위태리 산279-2	2023.09.1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44	35-11-04.8109	127-50-27.8311	중부	287906.56	276607.24	220.680	옥종면 위태리 산279-9	2023.09.1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45	35-11-07.5125	127-50-24.5739	중부	287989.12	276524.13	203.762	옥종면 위태리 산281-1	2023.09.1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46	34-57-24.5447	127-48-50.2815	중부	262606.85	274345.45	1.364	금성면 가덕리 1620	2023.09.13	맨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47	34-57-21.5708	127-48-52.3975	중부	262515.64	274399.88	1.262	금성면 가덕리 1113-408	2023.09.1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48	34-57-19.6367	127-48-51.0819	중부	262455.76	274366.99	1.111	금성면 가덕리 1620	2023.09.1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49	35-16-57.5113	127-36-31.3282	중부	298621.99	255375.92	654.607	화개면 범왕리 1605	2023.09.14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50	35-16-58.5974	127-36-33.9342	중부	298655.87	255441.56	654.115	화개면 범왕리 1604	2023.09.1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51	35-16-56.2058	127-36-34.0863	중부	298582.19	255445.86	644.699	화개면 범왕리 산267-1	2023.09.1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52	34-58-25.6786	127-53-09.4049	중부	264546.75	280903.26	39.578	금남면 대치리 728-1	2023.09.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53	34-58-24.1337	127-53-15.4020	중부	264500.49	281055.81	33.845	금남면 대치리 677-2	2023.09.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54	34-58-20.9759	127-53-14.0415	중부	264402.87	281022.16	34.385	금남면 대치리 671-5	2023.09.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55	34-58-21.6835	127-53-11.4653	중부	264424.09	280956.62	37.886	금남면 대치리 669-1	2023.09.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56	34-58-21.6567	127-53-08.4664	중부	264422.60	280880.55	42.258	금남면 대치리 1138	2023.09.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57	35-01-23.6312	127-53-58.9673	중부	270042.15	282111.11	27.936	진교면 진교리 131	2023.09.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58	35-01-21.7585	127-54-02.5614	중부	269985.26	282202.75	27.936	진교면 진교리 819-1	2023.09.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59	35-01-20.4089	127-54-04.8913	중부	269944.20	282262.19	27.936	진교면 진교리 819-1	2023.09.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60	35-02-00.8331	127-53-17.2279	중부	271179.17	281042.74	27.932	진교면 백련리 765-6	2023.09.2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61	35-01-59.5557	127-53-15.3772	중부	271139.39	280996.18	27.932	진교면 백련리 166-14	2023.09.2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62	35-01-58.3469	127-53-16.5311	중부	271102.39	281025.76	27.933	진교면 백련리 168-1	2023.09.2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63	35-01-59.8552	127-53-18.3490	중부	271149.29	281071.43	27.933	진교면 백련리 765-6	2023.09.2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64	35-09-32.1928	127-48-01.8055	중부	285021.69	272935.54	136.404	청암면 평촌리 산109-1	2023.09.2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65	35-09-33.5462	127-48-01.2487	중부	285063.28	272921.11	129.606	청암면 평촌리 912-1	2023.09.2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66	35-09-34.7528	127-48-00.4049	중부	285100.30	272899.45	127.547	청암면 평촌리 1360-1	2023.09.2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67	35-01-00.9666	127-49-43.2989	중부	269287.56	275635.29	8.862	고전면 고하리 743-13	2023.09.2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68	35-01-05.2711	127-49-39.3695	중부	269419.39	275534.57	14.346	고전면 고하리 867-1	2023.09.2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69	35-01-08.9586	127-49-35.0223	중부	269532.12	275423.41	19.030	고전면 고하리 1040	2023.09.2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70	35-04-57.5627	127-51-10.5819	중부	276597.67	277785.88	27.961	양보면 우복리 산228-1	2023.09.2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71	35-04-55.4274	127-51-08.1340	중부	276531.34	277724.43	27.961	양보면 우복리 567-2	2023.09.2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72	35-04-53.2069	127-51-05.7823	중부	276462.40	277665.44	27.961	양보면 우복리 601-1	2023.09.2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73	35-04-51.3054	127-51-02.9482	중부	276403.18	277594.14	27.951	양보면 우복리 670	2023.09.2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74	35-05-26.4620	127-49-35.5868	중부	277468.03	275371.96	127.001	양보면 감당리 836-1	2023.09.2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75	35-05-24.1042	127-49-36.7504	중부	277395.61	275402.04	123.549	양보면 감당리 1170	2023.09.2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976	35-05-27.0809	127-49-35.4634	중부	277487.08	275368.68	125.811	양보면 감당리 1170	2023.09.25	철재	세계측지계

★ 측량성과 보관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하동군 공고 제2023 - 1306호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및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운영 중이나 대상자 선정 및 자금규모, 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등 비효율적으로 검토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및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10월 19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예산과, 전화 880-2242, FAX 880-2019, e-mail : didtnal@korea.kr)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
2.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3.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현행조례
4.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현행규칙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폐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참고**현행 조례****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금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의 조성)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6.16.>

1.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금
2.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금액
3.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개정 2018.12.27.>

제3조(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6.16.>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삭제 2013.11.15.>

② 제1항에 따라 용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용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용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6.>

③ 군수는 제1항의 용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에 따른 용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자금용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1.6.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용자한도 및 이자율 등) ① 가구당 용자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치 3년 구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1.6.16.>

② 용자금의 대부 이자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4.8.13., 2011.6.16.>

제6조(용자금 대부신청) ① 용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3., 2013.11.15., 2018.12.27.>

② 제1항의 대부방법은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1999.8.9., 2001.4.23., 2013.11.15.>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금고계약 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용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6., 2013.11.15.>

제8조(용자금의 상환) 용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연1회 구분 상환한

다.

제9조(용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금고계약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5.>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용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용자금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4.8.13., 2011.6.16., 2013.4.10., 2013.11.15.>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11.15.>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담보물건을 설정하고 용자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3.11.15.>

제12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용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용자금 관리 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5.>

② 금고계약 금융기관의 장은 용자금 대출 후 그 내역(실제 용자수혜자 명단 및 용자 실적)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5.>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자금의 관리 및 운용은 금고계약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15.>

제1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용자금·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용자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한다. <개정 2011.6.16. 2020.10.29.>

제15조(삭제) <1999.8.9.>

제16조(용자금의 반환) 군수는 용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용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6.16.>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용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용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용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전에 용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대부 받은 가구에 용자금을 회수토록 통지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

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제19조(준용)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6.16.>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8.12.27.]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15.>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8.12.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하동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제1334호.1993.11.30.) 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등)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 칙 <개정 199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하동군 조례 제2424호, 2020.10.29.> 다른조례의개정(하동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융자금”을 “융자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한다.

③ ~ ⑩ 생략

참고

현행 시행규칙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6.,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2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자금용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1.6.16.>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주민행복과장, 농축산과장, 새마을운동 하동군지회장, 새마을지도자하동군협의회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2.14, 2002.12.20., 2005.6.30., 2008.10.30., 다른규칙개정 2011.1.7., 2016.1.1., 개정 2017.5.19.,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② 위원회는 용자금 지원 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4.10., 개정 2017.5.19.>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용자대상자의 선정
2. 용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
3. 조례 제16조에 따른 용자금의 반환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④ 읍면에서는 공정한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읍면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연대보증인)

<개정 2008.10.30., 개정 2011.6.16., 삭제 2013.11.15.>

제4조(융자금의 상환)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이 지난 후 융자금 지원일자를 기준하여 3년간 균분상환한다. <개정 2011.6.16.>

제5조(연체이자)

<개정 2004.8.13., 개정 2011.6.16., 삭제 2013.11.15.>

제6조(체납자조치)

<삭제 2013.11.15.>

제7조(준용) 자금 운용에 있어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규칙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규칙개정(하동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다른규칙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하동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⑤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행정과장, 통상교류과장,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 행정과장, 국제통상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농업정책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제8조, 제9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항,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68조제2항 및 제69조의2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제3조제1항제1호라목, 제3조제1항제1호차목, 제7조, 제9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31조, 제47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7조제3항, 제48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48조제4항, 제49조, 제59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2제2항, 제69조의2제3항, 제70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77조제2항, 제89조제1항, 제93조, 제120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2조제1항, 제130조제1항, 제130조제2항 및 제131조제1

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⑩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 농업정책과장, 통상교류과장”을 “주민행복과장, 농축산과장, 국제통상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4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16조제1호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 「하동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

부 칙 <개정 2017.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규칙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15호 중 “읍면·사업소 또는 실과”를 “읍·면 또는 담당관·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읍면 및 각 사업소”를 “읍·면”으로 한다.

② 「하동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현장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군 본청, 직속기관”으로 한다.

③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 실과소장”을 “행정지원국장·관광산업국장·기획예산담당관 및 전과·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실과소”를 “담당관·과·소”로, “관계실과소”를 “관계된 담당관·과·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소”로 한다.

제13조 중 “실과소”를 “담당관·과·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하동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 및 사업소”를 “담당관·과·소”로 한다.

⑥ 「하동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과장”을 “국장·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실과소장 및 담당관”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 및 과·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소관실과소장”을 “소관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실과업무담당주사”를 “담당관·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본청, 실·과”를 “본청, 국·담당관·과”로, “출장소, 실·과”를 “직속기관, 과·소”로 하고, “사업소, 실·과”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3의2서식 중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소속실과”를 “소속 담당관·과·소”로, “실·과”를 “국·담당관 및 과·소”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

별지 제16의2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

별지 제16의3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실과명”을 “담당관·과·소명”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

별지 제18의2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

별지 제20의2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

별지 제20의4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

⑦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경제전략과”로, “문화관광과”를 “관광진흥과”로 한다.

⑧ 「하동군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실장, 행정과장, 국제통상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행정지원국장, 관광진흥국장, 행정과장, 관광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관광실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행정과장”을 각각 “관광진흥국장”으로, “실과”를 “과·소”으로, “실과장”을 “과·소장”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실과장(사업소장 포함)”을 “국장 및 담당관, 과·소장”으로, “실과 내의 주무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주무과장 및 주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축산과장,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⑩ 「하동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직속기관, 읍면”으로 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6항 중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을 “직속기관, 읍·면”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군본청, 직속기관, 읍·면”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군본청 및 직속기관은 당직주무과장·업무담당주사, 사업소는 사업소장·주무담당주사,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를 “군본청 및 직속기관은 당직주무과장·업무담당주사,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군본청 및 직속기관은 당직주무과장·업무담당주사, 사업소는 사업소장·주무담당주사,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를 “군본청 및 직속기관은 당직주무과장·업무담당주사,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본청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행정과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을 “행정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군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별표 중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을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실과근무책임자”를 “담당관·과·소 근무책임자”로, “실과명”을 “담당관·과·소명”으로 한다.

⑪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 및 과·소”로 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 및 과·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각각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⑮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과”를 각각 “담당관·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마목1)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마목2) 중 “실·과장·사업소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아목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차목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과목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하목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거목 중 “실과 및 사업소”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라목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자목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를 “담당관·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해당실·과장”을 “해

당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21”을 “제21조”로, “자치행정과장”을 “인사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각각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23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중 “전사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36조 중 “주관실·과장”을 “주관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하동군 상하수도사업소, 하동군 체육시설사업소”를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실·과”를 “국”으로, “팀”을 “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실·과”를 “국”으로, “팀”을 “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실·과”를 “국”으로, “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실·과”를 “국”으로, “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실·과”를 “국”으로, “팀”을 “담당관·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9-1호서식 중 “실·과”를 “국”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9-2호서식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중 “실”을 “국”으로, “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89호서식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98호서식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 중 “실·과”를 “국 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102호서식 중 “실·과”를 “국 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104호서식 중 “실·과”를 “국 담당관·과”로 한다.

· 「하동군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본청, 직속기관”으로 한다.

·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회사무과”를 “본청, 직속기관, 읍·면, 의회사무과”로 한다.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소속행정기관(이하 “청·소”라 한다)”를 “소속행정기관”으로, “청·소의 장”을 “소속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청·소”를 “소속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실·과 및 청·소”를 “담당관·과 및 소속행정기관”으로 한다.

·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실과단장”을 “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실과단”을 “담당관 및 과·소”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를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주관실과장”을 “주관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부 칙 <다른규칙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1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제5조제15호 중 “읍·면 또는 담당관·과”를 “읍·면 또는 과”로, 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행정지원국장·관광산업국장·기획예산담당관 및 전 과·소장”을 “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③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8조제1항 중 “담당관·과·소”를 “과·소”로, “관계된 담당관·과·소”를 “관계된 과·소”로, 제12조제1항 중 “담당관·과·소”를 “과·소”로, 제13조 중 “담당관·과·소”를 “과·소”로, 별지 제2호서식 중 “담당관·과·소장”을 “과·소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중 “담당관·과·소”를 “과·소”로 한다.

⑥ 「하동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2조제2호 중 “국장·담당관·과장”을 “국·과장”으로, 제2조제5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3조제3항 중 “국·담당관 및 과·소”를 “국·과·소”로, 제7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7조제2항 중 “담당관·과”를 “과”로, 제7조제3항 중 “소관 담당관·과장”을 “소관 과장”으로, 제8조제2항 중 “담당관·과 업무담당주사”를 “과 업무담당주사”로, 제10조제2항 중 “담당관·과”를 “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본청, 국·담당관·과”를 “본청, 국·과”로, 별지 제4호서식 중 “소속 담당관·과·소”를 “소속 과·소”로, “국·담당관 및 과·소”를 “국·과·소”로, 별지 제13호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로, 별지 제15호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로, 별지 제16의2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별”로, 별지 제16의3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별”로, 별지 제17호 서식 중 “담당관·과·소명”을 “과·소명”으로, 별지 제18호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별”로, 별지 제18의2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별”로, 별지 제20의2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별”로, 별지 제20의4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별”로, 별지 제23호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별”로 한다.

- ⑦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별표 1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 ⑧ 「하동군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 규칙」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관광진흥국장, 행정과장, 관광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전 국장, 주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 ⑨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행정국장”으로,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문화환경국장”으로, “관광산업국장”을 각각 “건설도시국장”으로, 제2조제3호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 ⑩ 「하동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제1항제5호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별지 제4호서식 중 “담당관·과·소 근무책임자”를 “과·소 근무책임자”로, “담당관·과·소명”을 “과·소명”으로 한다.
- ⑪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제2조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3조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3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3조제3항제2호 중 “국·담당관 및 과·소”를 “국·과·소”로, 제3조제3항제9호 중 “국·담당관 및 과·

소”를 “국·과·소”로, 제4조제2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각각 “국·과·소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과 주관 및 관련 부서의 국·과·소장”을 “주관 및 관련 부서의 국·과·소장”으로, 제7조제2항 중 “담당관 및 과·소장”을 “과·소장”으로, 제8조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8조제3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2조제1항제2호 중 “담당관·과”를 각각 “과”로,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마목1)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마목2)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아목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차목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과목 중 “담당관·과”를 “과”로, 제3조제1항제1호하목 중 “담당관·과”를 “과”로, 제3조제1항제1호거목 중 “담당관·과”를 “과”로, 제3조제1항제3호라목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3호자

목 중 “담당관·과”를 “과”로, 제8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9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0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0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1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1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3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3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4조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5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15조제3항 중 “담당관·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6조 중 “담당관·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7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8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를 “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8조제3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9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9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9조제3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9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

장”으로, 제20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20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담당관·과”를 “과”로, 제20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21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21조제1항제2호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2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23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23조제4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25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25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26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를 “과”로, 제27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27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해당 담당관·과장”을 “해당 과장”으로, 제28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2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29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29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31조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47조제1항 중 “담당관·과”를 “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47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48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48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59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68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69조의2제1항 중 “기획예

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69조의2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23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29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36조 중 “주관 담당관·과장”을 “주관 과장”으로, 별표 1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기획행정국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를 각각 “과”로, “담당관·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별지 제12호서식 중 “담당관·과”를 “과”로, “담당관·과”를 “과”로, 별지 제14호서식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별지 제15호서식 중 “담당관·과”를 “과”로, 별지 제16호서식 중 “담당관·과”를 “과”로, 별지 제19호서식 중 “담당관·과”를 “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별지 제19-1호서식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별지 제19-2호서식 중 “담당관·과”를 “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별지 제20호서식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별지 제51호서식 중 “담당관·과”를 “과”로, 별지 제89호서식 중 “담당관·과”를 “과”로, 별지 제98호서식 중 “담당관·과”를 “과”로, 별지 제101호서식 중 “국 담당관·과”를 “국·과”로, 별지 제102호서식 중 “국 담당관·과”를 “국·과”로, 별지 제104호서식 중 “국 담당관·과”를 “국·과”로 한다.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중 “담당관·과 및 소속행정기관”을 “과 및 소속행정기관”으로 한다.
-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담당관 및 과·소장”을 “과·소장”으로, “담당관 및 과·소”를 “과·소장”으로, 제8조제4항 중 “주관 담당관·과장”을 “주관 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3 - 1317호

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안
2. 제안 이유 : 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감소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귀향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라. 귀향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마. 귀향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바. 귀향인 지원사업의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하동군 (참조 : 미래전략담당관, 전화 055-880-2427, FAX 055-880-7159, e-mail: hlsung@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향인”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10년 이상 군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
2.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귀향인의 정주여건 조성 및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5년마다 하동군 귀향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향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귀향인 지원 사업 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3. 귀향인의 주거 및 생활 지원 방안
4. 귀향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5.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귀향 홍보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귀향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경우 귀향인,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귀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사업
2. 귀향인에 대한 주택 신축 및 개량 지원사업
3. 귀향인의 농지 구입 및 임대 지원사업
4. 귀향인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사업
5.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하동군민 간 교류·협력 지원사업
6. 귀향인 5호 이상 집단 이주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7. 귀향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8. 귀향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귀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귀향인 지원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동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하동군 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3- 1303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하동군수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강원도 4개 시·군(화천, 철원, 춘천, 양구) 및 경기도 2개 시·군(포천, 가평)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가. 축산농장 : 돼지농장
 -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3. 9. 26. 00:00부터 2023. 9. 27. 24:00까지(48시간)

5. 기타사항

-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3. 9. 26. 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3. 9. 26. 02:00부터 실시한다
-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담당부서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전화 055-880-2436)

7. 전국 가축방역기관 연락처

시·도	전화번호	시·도	전화번호
서울	02-570-3444	강원	033-248-6625
부산	051-330-6121	충북	043-220-6253
대구	053-760-1301	충남	041-635-7026
인천	032-440-5643	전북	063-290-5400
광주	062-613-7651	전남	061-430-2140
대전	042-270-6895	경북	053-326-0013
울산	052-229-5242	경남	055-254-3022
세종	044-301-3825	제주	064-710-8545
경기	031-8008-6220	검역본부	054-912-0982